

총회 진행절차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2019

한국어

북미주 개혁교회에서 독자를 위해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입니다. 번역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총회 사무실 (translate@crcna.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론

총회(Synod): 총회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총회란 무엇인가?

북미주 개혁교회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 교인과 회중, 노회, 기구 및 사역을 위해 행정과 리더십을 제공하는 총대들의 모임인 교회회의입니다. 총회라는 말은 헬라어 *σύνοδος* (*sýnodos*)에서 유래되어 “의회” 혹은 “회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총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북미주 개혁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인 **노회**와 각 교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모인 **제직회**와 더불어 중요한 교단 규모의 행정과 리더십 역할을 감당한다.

A.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주요한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총회 회의를 이끌 임원을 선출한다.
2. 토론을 위해서 분과 회의 및 본회의 형식으로 의제의 맥락을 제공한다.
3. 교단이사회 운영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단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교단 기구, 사역, 기관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그들의 권한, 내규, 정관을 감독한다.
4. 총회가 임명한 연구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5. 교단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사역 그룹의 대표자를 임명한다.
6. 신학교 교수, 대학 및 신학교 총장, 교단대표를 포함하여 특정 직원과 기관대표를 임명하거나 비준한다.
7. 교단대표를 통해 교단 운영을 위한 방향 및 설명을 제공한다.
8. 교회헌법, 예전 양식, 신앙고백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한다. (교회헌법 제 47 조 참조)
9. 교단 예산을 검토하고, 사역분담금 체제를 따라 매년 사역 분담금 금액 책정을 승인하여 교단 기구와 사역 기관의 재정을 감독한다.
10. 노회, 회중 및 개인으로부터 헌의안, 의견서, 항소를 받고, 토론하며 처리한다.
11. 재판국(Judicial Code Committee)을 통해 총회로 넘어온 항소와 제안을 판결한다.
12. 에큐메니칼 위원회(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를 통해 범교회적 그리고 타종교 관계를 감독하고 증진한다.
13. 역사기록 위원회(Historical Committee)를 통해 교단의 문서기록 작업을 감독한다.

14. 북미주 개혁교회의 목회자 후보들을 승인하고, 목회자 후보위원회의 기타 업무를 감독한다.

15. 총회감독(synodical deputy)의 임명을 비준하고 그들의 업무를 승인한다.

B. 총회의 부차적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총대와 자문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2. 예배, 기념행사 및 교재를 위한 교단 차원의 자료를 제공한다.

3. 여러 세미나, 워크숍, 토론 그룹 등의 사역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4. 때때로 서신 혹은 기타 양식의 의견서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와 사안에 관한 교단의 입장을 알린다.

(2019 총회회의록, 807~808쪽)

I. 총회 소집 및 구성

A. 총회는 교회헌법, 45 조, 46 조를 따라 그리고 2000 년, 2019 년 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구성해야 한다.

B. 총회는 소집 교회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교회는 교회 공식 출판물에 다음 총회를 회의 3개월 전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C. 주일 총회 예배는 총회 예배 기획 위원회가 기획하며 기존에 채택한 지침에 따라 현지 교회 회중을 최대한 사전 기획 및 예배진행에 참여시킨다. (예: 성찬식 혹은 구성원의 다양성 반영 등) 총회 모든 회원은 이 예배에 참여한다.

(2019 총회회의록 수정, 803 쪽)

D. 소집 교회의 목회자는 (혹은 목회자 공석일 때는 카운셀러가) 임시로 회장직을 수행하며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명식 당일 및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임시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 명단을 확인하고 개회예배를 집행한다.

2. 따라서, 임시 회장은 규정된 대로 총대의 교적 증명을 요구한다. 정족수를 확인하고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했으면)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3. 총회 임원은 후보자 명부에서 총대에 의해 선택하며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순서대로 총대중에서 후보의 번호를 수합한다. 누구든지 유효한 다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선거 절차의 모든 단계 마다 득표수를 공표한다. 총회는 다음 투표에서 어떤 후보자의 번호가 포함되는지 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득표수에 해당하는 명단을 알파벳 순서로 공표한다.

4. 임시 회장은 이에 따라 당선된 임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맡기고 회장과 나머지 임원들을 회의에 소개한다.

E. 총회가 진행 중인 동안 회원은 의장의 허락 없이 총회를 떠날 수 없다. 누구든지 총회의 동의 없이 회의를 떠나 귀가할 수 없다.

II. 총회 임원의 의무

A. 회장

1. 회장은 총대와 자문위원을 일어서게 한 후, “북미주 개혁교회의 신앙에 동의한다는 공개 선언”을 낭독시킨다. 그 후 그들 자신의 동의를 한 목소리로 선언하게 한다. 이 후에 참석하는 총대가 있다면 참석할 때 그 개인의 동의를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2. 회장은 예정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일정이 적절하게 개회와 폐회를 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3. 회장은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모든 회원이 규례와 격식을 지키는지 감독한다.
4. 회장은 에큐메니칼 총대, 또다른 총회 방문자를 환영하고, 접수한 안부인사에 대해 회신하거나 혹은 이를 담당할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5. 회장은 모든 헌의안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질문이 분명하게 거론되어야 한다.
6. 토론 중인 사안에 대해 회장이 의사 표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의장 자리는 양도될 수 있고, 회장의 발언 동안 부회장 그 역할을 맡는다. 회장은 의장의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언급하거나 총회에 질서의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다.
7. 회장은 적절하게 접수하고, 동의안을 발표하고 질서위반자를 발표할 특권을 가진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때, 총회는 과반수 득표로 의장의 사회권을 유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8.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회장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표를 행사할 수 있다.
9. 회장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항이 연관된 문제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10. 회장은 모든 순서에 대해 사회권이 있다. 어느 총대라도 회장의 사회권에 불만을 표하고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과반수 투표로 의장의 사회권은 제한될 수 있다.
11. 회장은 마지막으로 적절한 발언과 기도로 총회를 마친다.

B. 부회장

1. 회장 부재시, 부회장은 회장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환경이 허락하는 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회장을 돕는다.

C. 서기 및 부서기

1. 서기는 매일 개회예배 직후에 출석을 부른다.
2. 서기는 총회 진행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일정 별 개회 및 폐회, 출석을 기록한다.
 - b. 통과된 동의안과 부결된 동의안 모두를 기록한다.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항소를 기록한다.
 - c. 분과 회의의 모든 보고서와 총회의 모든 결정을 기록한다.

d. 에큐메니컬 대표단의 이름과 총회에서 소개된 모든 이름을 기록한다.
e. 총회 차원의 모든 서류와 모든 토론의 단계, 혹은 과반수 득표로 총회가 회의록에 포함시키기로 한 모든 언급을 기록한다.
3.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주동의안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통과되지 않은 동의안은 기록하지 않는다.
b. 철회한 동의안은 기록하지 않는다.
c.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4. 당일 회의록은 총회임원이 임명한 소위원회가 점검하고 교정한다. 편집되고 교정된 회의록은 대표단이 읽을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 게재한다. 대표단이 요청할 경우 복사본을 제공한다.
5. 부서기는 서기의 부재시 서기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부서기는 필요한 경우에 서기를 가능한 한 보조한다.
III. 비총대 참석자의 임무
A. 교단대표
교단대표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의 일정을 계획하며 총회 중에는 행정임원 기능을 담당한다.
2. 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청된 문제에 관하여 정보와 조언을 가지고 총회를 섬겨야 한다.
3. 총회 혹은 교단이사회가 허가해야 하는 공식적인 출판물을 편집하고 인쇄한다.
4. 총회 회의에서 교단대표의 권한과 관련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한을 가지며 집중토의 시간에 참석한다.
B. 총회 자문위원
2014년 총회는 총회 업무에 있어서 자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에서 장래 전원 교수자문위원을 선출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전원 교수 자문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은 특정한 총회 안건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이다. 소수 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의 경우에는 선출의 근거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교회와 노회가 보낸 추천서에 달려있다.
(2014 총회 회의록, 537 쪽; 2015 총회 회의록, 673 쪽)
1. 총회 자문위원 규정
a. 자문위원은 그들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b. 자문위원들은 보통 총회 회기 동안 출석해야 한다.
c. 자문위원은 원칙상 준비위원회가 배치한 자문위원회에만 참여한다. 다른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하려면 해당 위원회 의장과 보고자를 통해 승인과 지로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d. 교수 자문위원은 본회의의 총회 토론에 참여해 조언과 신학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e.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들은 본회의의 총회 토론에 참여해서 거론되는 문제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

f. 자문위원들은 정상적인 토론의 순서 안에서 총회 본회의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총대를 섬기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g. 자문위원은 본인이 섬기는 자문위원회 혹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

(2014 총회 회의록, 539-40 쪽; 2015 총회 회의록, 673 쪽)

h.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를 위한 일반 고려 사항

1) 자문위원 (최대 3 명까지)으로 임명되려는 사람은 2 년의 임기동안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험 있는 자문위원과 신입 자문위원이 각 총회 마다 있을 것을 의미한다.

2) 교통, 숙박, 식사 비용은 총회가 지급한다.

3) 몇몇 노회가 제공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대표를 위해 그들의 섬김에 대한 보수를 (교단대표가 필요한 때마다 정한 금액) 지급할 수 있다.

i.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는 북미주 개혁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보여준 흠없는 교인이어야 한다.

j.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의 임명

교단이사회는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를 매년 2 월 회의 때 선출한다.

교단대표는 교회가 제출한 제안에 따라 자문위원 후보자들을 수합한다. 인종관계사역부 대표도 역시 소수민족 자문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2. 총회 자문위원 분류

a. **교수자문위원**은 칼빈신학교 교수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일반임명 절차를 따른다.

1) 교단대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상의하여 가능한 빨리 특정한 해에 필요한 신학 전문가를 결정해야 한다. 칼빈신학교 운영진과 상의하여 그 특정한 해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진을 뽑는다. 칼빈신학교 운영진은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대표와 상의하여 총회의 필요와 교수진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해에 총회 자문위원으로 섬길 수 있는 교수진을 가려낸다. 교수 자문위원의 숫자는 보통 5 명 이하가 되서는 안 된다.

2) 자문위원은 교단대표가 제안하고, 총회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자문위원에 배치된다.

3)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총회의 일반적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b. **소수민족 자문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 총대구성으로는 적절히 대변되지 않는 북미주 개혁교회 내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목소리다. 2005 년 총회에서 채택된 선출 규정에 부합하는 투표권 없는 자문위원을 최대 7 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소수민족 자문위원이 총 25 명을 넘지 않는 한 7 명 (혹은 비율상)의 자문위원은 임명되어야 한다. 선출된 투표권 있는 소수민족 총대가 18 명을 초과할 경우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숫자는 7 명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소수민족 자문위원이 2 명 이하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들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위해 적절한 공지 시간을 주기 위해 임명될 소수민족 자문위원의 숫자는 이전 3년 동안 총회에 인종 다양성을 대표했던 이들의 평균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 자문위원은 교단대표가 제안하고, 총회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자문위원에 배치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총회의 일반적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c. **여성자문위원**은 회의에 성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총회 사역을 풍성하게 한다. 2015년 총회가 지시한 선출 규정에 따르면 최대 7명까지 여성을 투표권 없는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성 자문위원이 총 25명을 넘지 않는 한 7명 (혹은 비율상)의 숫자는 유지될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진 선출된 여성 총대가 18명을 초과할 경우 여성자문위원의 수는 7명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2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들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위해 적절한 공지 시간을 주기 위해 임명될 여성 자문위원의 숫자는 이전 3년 동안 총회에 여성 대표로 활동한 이들의 평균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 자문위원은 교단대표가 제안하고, 총회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자문위원에 배치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총회의 일반적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d. **청년 대표**는 노회에서 선출한 총대구성으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청년 성도를 (18-26세) 대변하는 목소리다. 대표들을 임명할 때는 이전 총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청년 대표는 교단대표가 제안하고, 총회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자문위원에 배치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총회의 일반적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e. **직원 자문위원**은 교단의 행정 직원들을 일컫는다. 교단대표와 관련된 직무로 섬기고, 교단대표가 지정한다. 총회준비위원회와 상의하여 총회 회의를 섬긴다. 다음의 일반적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안건에 관한 모든 사안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문은 교단대표 혹은 그를 대표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2) 교단대표가 교단직원 자문위원에게 분과위원회를 섬기도록 직무를 주었을 때 교수 자문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으로 배치될 필요는 없다.

3) 교단 직원 자문위원의 직무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특정한 전문분야에 한정한다. 이는 분과위원회와 총회 본회의를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f. **기관 이사진 임원단** (보통 기관 운영이사들과 기구 대표)과 **교육 기관 대표**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기구나 기관의 보고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다. 또한, 그들과 관련된 보고서를 토의할 때, 그들은 총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칼빈신학교와 칼빈대학교 총장은 총회자문위원으로 지명되어 그들이 대표하는 기관들에 영향을 끼칠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

g.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이사회의 총회 대표단**은 교단이사회 의장, (미국과 캐나다를 각각 대표하도록) 최소 한 명 이상의 다른 교단이사회 임원,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대표, 총회를 섬기는 교단 행정 직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단이사회 안건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와 회의를 할 권한이 있으며 교단이사회 안건이 본회의에 언급될 때 회의에 출석할 권한도 있다.

(2014 총회회의록 537-39 쪽; 2015 총회회의록 673 쪽;
2017 총회회의록 641 쪽; 2019 총회회의록 810 쪽)

h. **규칙위원회**는 매년 총회가 열리기 전에 총회준비위원회가 임명한다. 규칙위원의 의무는 교회헌법 및 총회 절차 규칙과 관련된 적절한 절차에 관해서 회장에게 자문을 줌으로서 총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는 회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해 반응하고,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임원들과 함께 섬기는 것도 포함한다. 임명된 자는 교회헌법 및 회의 운영에 전문성을 보여야 하며 임원 및 기타 직원들과 총회회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임명된 자는 총회 절차 규칙에 관련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가 있고, 즉석에서의 조언 뿐 아니라 임원이 선출된 즉시 임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직위는 교회 정치를 위한 교수자문위원이 맡을 수 있다. 1년 임기동안 섬기는 규칙위원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IV. 에큐메니컬 대표단과 교회 정기간행물 보고자

A. 교단간 교제 차원에서 각 교회에서 모인 범교회적 에큐메니컬 대표단은 총회 앞에서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원회 의장의 허락 하에 분과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1975 총회회의록, 39 쪽)

B. 총회 특파원의 업무는 총회 활동과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V. 총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A. 정의

1. 항소

항소는 절차에 따라 교회의 기존 정책과 기준을 고려한 심의를 위하여 적절한 회의로 가져가는 회의, 이사회, 기관 혹은 위원회가 내린 결정 혹은 행동이다.

2. 의견서

의견서는 회의를 염두에 두고 정보, 아이디어, 생각, 의견, 불만 혹은 반대를 기록한 문서이다. 헌의안이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는 것에 반해 의견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의견서의 하나의 유형은 회의 이후 결정, 행동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를 표현하는 시위다. 회의는 의견서에 관하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3. 헌의안

헌의안은 회의가 제안을 채택하거나 또는 정책 수정 요구나 기타 입법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회의로 보낸 공식적으로 기록한 안건이다.

4. 보고서

보고서는 이사회, 위원회 혹은 기관이 회의의 지시에 따라 행한 사역과 회의의 행동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B. 다음은 총회가 다룰 적법한 사항 목록이다.

1. 이의제기

(지침과 규정은 교회헌법 제 5 조 보칙 참조)

2. 보고서

이전 총회에서, 이사를 포함하여, 임명된 위원회가 내는 보고서이다.

3. 총회 헌의안 및 의견서

a. 노회 (노회가 발의했거나 채택했는지 관계없이) 혹은 교회헌법 44-b 조에 따라 조직된 회의가 제출한 헌의안과 의견서.

(1993 총회회의록, 574 쪽)

b. 제직회 그리고/혹은 노회로부터 채택되지 못했지만 개인이나 제직회가 총회로 보내기 희망하는 헌의안과 의견서:

1) 제직회 (제직회가 발의했거나 채택했는지 관계없이)가 노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노회가 채택하지 않은 헌의안과 의견서.

2) 제직회와 노회에 제출했으나 제직회나 노회가 채택하지 않은 개인 올린 헌의안과 의견서.

3) 개인이 제출한 것을 해당 제직회가 채택하여, 노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노회가 채택하지 않고, 제직회도 총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개시한 개인이 총회에 제출하려는 헌의안과 의견서

c. 회의와 멤버들은 이미 총회안건집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단순한 동의 혹은 반대의 표현이거나 반복적인 헌의안, 항소, 혹은 의견서를 제출을 삼가야 한다.

교단대표는 출간된 **총회안건집**에서 그런 안건들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그런 안건들의 경우 단순한 목록으로 제시되거나 의견서로 받아야 한다. 그런 안건의 제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그들의 안건서류는 해당 총회 분과회의에 보내야 한다. 정보로 받은 문제들은 대개 분과위원회 보고서 나 **총회 회의록**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4. 재판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항소들

(항소와 관련한 절차 규정은, 교회헌법 제 30-a, 30-b 조 보칙 B 부분을 보라.)

5. 재판국 규칙 아래 총회에 합당하게 제시된 항소들과 다른 안건들

(재판국 규칙은 교회헌법 제 30-c 조 보칙을 보라)

6. 목회자후보위원회로부터 추천받지 못한 개인의 목회자 후보 지원

(적용가능한 절차 규칙은 교회헌법 제 30-b 조 보칙 A 부분을 보라)

7.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의안과 의견서

안건을 제시한 본인이 제직회나 노회에 참석하여 제안할 수 없는 헌의안과 의견서. 이런 사안은 제보로 접수하여야 하며, 교단대표에게 안건 제시자가 그 안건을 제직회나 노회와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이 안건을 제보로 받을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8. 늦게 제출된 보고서와 헌의안

교단대표는 9 월 15 일 이후에 제출한 교리나 윤리적 입장 및 교회헌법 개정안에 관한 이사회나 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또는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3 월 15 일 이후에 제출한 헌의안은 총회가 이미 출판된 **총회안건집**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접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외의 헌의안이나 연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만 총회의 특별결정에 의해 고려할 수 있다.

9. 인쇄된 헌의안과 연구위원회 보고서

연구위원회 보고서는 9 월 15 일 또는 그 이전까지 교단대표에게 접수해야 하며, 교단대표는 그 보고서를 11 월 1 일까지 교회에 배포해야 한다. **총회안건집**은 4 월 초 이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안건은 상임위원회, 연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노회, 제직회 또는 개인의 헌의안; 출간된 항소; 미출간된 항소의 공지; 의견서의 목록; 총대의 이름; 그리고 관련 공지를 포함해야 하고, 교단대표의 추천에 따라 교단이사회는 합당한 이유로 인해, 어떤 안건을 출간하지 않거나 또는 요약판으로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요약판으로 발행될 경우라면, 전체 안건은 해당 총회 분과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 출간되지 않은 안건들도 **총회 안건집**에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안건들은 다음의 마감일에 늦지 않게 교단대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연구 위원회 보고서는 9 월 15 일; 상임위원회와 허가를 받은 대표자의 보고서는 2 월 15 일; 이사회 보고서는 이사회 모임이 끝난 뒤 10 일 이내이지만, 3 월 1 일을 넘어서는 안됨; 그리고 헌의안과 항소는 3 월 15 일.

10. 보충 보고서

방송선교부와 글로벌 선교부의 보고서를 포함한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이사회; 칼빈 신학교 이사회; 칼빈 대학교 이사회; 국제구제부 이사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역사기록 위원회; 그리고 목회자후보위원회는 3월 15일 이후에 보충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는 안건들을 최대한 출간된 총회안건집에 포함되게 하고, 보충보고서에 관련된 안건들은 최소로 유지해야만 한다.

11. 기밀 사항들

준비위원회 혹은 교단이사회의 조언 아래, 교단대표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미출간된 항소, 의견서, 혹은 총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 관련 분과위원회에만 배포된다. 이름의 공개로 인해 잠재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며, 해당 문제들은 분과위원회의 집중토의에서 다루질 것이다.

(2013 총회회의록, 549 쪽; 2017 총회회의록, 641 쪽)

12. 기타 문제들

기타 모든 사안들을 총회가 받을지는 다수결 투표로 의결한다.

13. 교단외부 기관들

교단의 후원을 받는 외부기관들은 대개 총회에 연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

VI. 총회 위원회

A. 준비위원회

1. 회원

a. 준비위원회는 기존 총회의 임원과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대표로 구성된다.

b. 준비위원회에 공석이 생긴 경우, 교단이사회는 다른 준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2. 분과위원회 구성

a. 준비위원회는 5월 1일 이전에 미리 만나서 다양한 분과위원회에 총대를 배치한다.

b. 준비위원회는 모든 보고서, 헌의안, 기타 의견서를 다양한 그룹에 맞게 분류하고, 어떤 안건을 총회에 바로 상정할지, 어떤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지 검토해야 한다.

c. 지정한 총대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총회의 수정으로 노회의 부총대가 지정된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3. 교단대표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총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표로 만든다.

b. 5월 15일 이전까지 대표단에게 분과위원회 임시배정을 알린다.

c. 의장과 총대가 맡은 과제와 관련된 배경 설명을 제공한다.

d.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전 **총회회의록**에서 얻을 수 없는 배경 정보들에 대한 사본을 제공한다.

4. 총대의 신상정보

a. 모든 노회의 서기는 각 총회 대표단에 대한 신상정보를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교단대표에게 3월 15일 이전까지 보내야한다. 총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 총대를 자기 소개서를 포함해서 제안한다.

b. 이러한 신상 정보는 다음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목사 총대의 경우 -

1) 이전 총회에 총대로 참여한 경험은? 몇 년도?

2) 그 총회의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섬겼는가?

3) 교단 이사회, 상임위원회 혹은 연구위원회에서 섬기고 있거나 과거에 섬긴 경험이 있는가?

4) 노회 및 혹은 지역교회 위원회에서 섬기고 있거나 과거에 섬긴 경험이 있는가?

5) 총회 업무 중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심사는 어떤 분야인가?

6) 당신을 총회 분과위원회에 배치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는 무엇인가?

장로 및 집사 총대의 경우 -

1) 목사 총대에게 물은 것과 동일한 문제.

2)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

3) 이전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5. 준비위원회 보고서

a. 준비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는 5월 25일 이전에 모든 총대에게 배부 되어야 한다.

b. 이 보고서는 가능한 수정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총회 사무의 주요한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970 총회회의록, 56-57 쪽; 1972 총회회의록, 14 쪽)

B.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성격**. 분과위원회는 (재판국은 제외하고) 총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오직 총회 기간에만 섬긴다. 분과위원회는 주어진 문제를 요약하고 그 문제와 관련한 제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2. 위원회를 운용하는 **조직과 규칙**

a. 위원회 임명시 처음 불리는 사람은 의장이고, 두 번째 불리는 사람은 보고자다. 재판국을 예외로 각 분과위원회에 부의장과 부보고자를 임명한다.

b.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 사회를 보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핀다.

c. 총대와 자문위원은 지침을 따라서 분과위원회 회기 중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총대가 아닌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회의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총회회의록, 811-12 쪽)

d. 총회 회원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 앞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원회든지 참석할 수 있다.

e. 위원회 보고서는 의장과 보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다수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가 둘 다 있다면, 각 보고서는 그것을 선호하는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비고: 위원회 위원들은 소수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의장으로부터 소수 반대의견을 언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f. 다수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보고서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낭독되고 채택된 뒤에, 소수 보고서를 읽고 정보로 받아야 한다.

(1955 총회회의록, 58 쪽)

g. 위원회의 보고서가 인쇄된 형태로 사전에 총회에 배포되고, 총회의 위원들이 이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보고서를 최초 낭독할 필요가 없다. 회장이 보고자를 호출할 때, 보고자는 그 보고서가 인쇄된 형태로 총회의 손에 넘어갔음을 진술하고 그 보고서를 받아들여기로 동의하여야 한다.

h. 토론이 진행중인 동안 주로 분과위원회 의장과 보고자가 보고서를 변호한다. 이들은 모든 다른 연사보다 우선 발언권을 가지며 연설의 기회와 분량에 제한 받지 않는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기존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i. 총회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 위원회의 제안은 다시 한번 추천될 수 있다.

3. 연구를 위한 총회의 휴정

분과위원회가 임명된 후, 총회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휴정할 수 있다.

C.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에 각 총회는 다음 위원회를 세워야 한다.

1. **환영 위원회.** 회장이 임명하며 에큐메니칼 대표단 환영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는 총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총회는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을 총회에 참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 회기 동안 섬기는 특별위원회

D. 이사회 및 위원회 임명을 위한 규칙

1. 모든 연구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권한을 작성한 자문위원 위원회가 결정한 후보 중에서 총회 임원들의 조언을 받아 총회가 임명한다. 총대는 분과위원회에 후보명단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했다면, 총대중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자는 총회 회의 시 후보자를 발표한다. 연구위원회 임명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기한을 2 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총회 임원들, 분과위원회 의장과 보고자, 분과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1 명에게 있다.

분과위원회는 총회에 권한의 범위에 대해 조언해야 하며 다음의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조언 가운데 포함한다.

a. 총회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양한 교회를 대표하는 회원 9-12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상의 규칙에 의거하여 총회가 임명하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하고, 임명된 후 3 년 뒤에

총회에 보고 해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도 보고할 수 있다. 각 교회에 배부하기 위한 최종 보고서를 9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기로 계획된 총회가 열리기 전인 11 월 1 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보고서가 10 쪽 이상일 경우 개요서를 포함해야 한다.

b. 총회 특별위원회

총회 특별위원회는 자격과 권한이 더 제한되어 7-10 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의 규칙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총회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받는다. 종종 임명된 후 2~3 년 뒤 총회에 보고를 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사이에도 보고해야 한다. 총회는 정해진 임무가 중요한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각 교회에 배부하기 위하여 최종 보고서를 9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기로 계획된 총회가 열리기 전인 11 월 1 일에 제출해야 하도록 하거나 총회 안건집에 포함시키기에 2 월 15 일 마감일이 충분한지 밝혀야 한다. 제출하는 보고서가 10 쪽 이상일 경우 개요서를 포함해야 한다.

위의 규칙의 예외로, 총회는 교단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특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북미주 개혁교회 사역과 관련이 있고, 교단이사회를 통한 보고가 빈번한 의견교환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도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렇게 한다. 교단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동의와 같은) 평가를 제공하거나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총회 연구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어떤 문제가 교단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일 경우 그렇다.

총회는 매년 주된 연구 보고서가 2 종 이상이 되지 않도록 안건을 제한해서 좀 더 풍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1979 총회회의록, 15 쪽; 1980, 21 쪽; 1997, 634 쪽;
2014, 540 쪽; 2016, 827-28; 2017, 641 쪽; 2019, 803 쪽)

2.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위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와 위원회 위원들의 공석은 첫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위해 보통 다수의 후보자 명부를 제공하는데 교단이사회 노회 후보자들은 예외이다. 이사회와 위원회는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 단수 후보자 (재임자)를 제시한다. 몇몇 이사회는 그들 정관 혹은 내규에 따라 결정하여 세 번째 임기를 위한 회원을 제시한다.

(1976 총회회의록, 16 쪽; 1998 개정판, 406-407 쪽;
2015, 633 쪽; 2017, 640-41 쪽)

3. 모든 상임이사회와 총회 위원회, 그리고 노회의 서기들은 후보자 명단이 결정된 회의 직후 그들이 결정한 후보자 명단을 교단대표에게 제시한다.

(1979 총회회의록, 16 쪽)

4. 총회 임원, 직원, 감독, 이사 및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은 교단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979 총회회의록, 15 쪽)

5. 총회 회장은 교단대표를 총회의 임명과 관련된 모든 무기명 투표, 후보 추천, 그리고 다른 사안에 참석하도록 요구한다. 연구위원회 위원 지명은 예외로 한다. (참고: 포인트 1)

6. 직무 자격과 임기에 관한 규칙

a. 한 이사회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는 이 특정 이사회 의 총대가 될 수 없다.

(1966 총회회의록, 87 쪽)

b. 3년 임기의 총회 이사직과 위원회직을 2회 담당한 자들은 재선 자격이 없다. 총회가 이 조항에 대한 특정한 예외를 승인했을 때는 가능하다.

c. 교단 이사회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임원의 임기는 시작 또는 종료하는 연도의 7월 1일에 시작하거나 끝난다.

(1972 총회회의록, 14 쪽; 1996 총회회의록, 536 쪽)

d. 교단이사회에 예상 밖의 공석이 생겼을 경우, 교단이사회는 노회 추천이사를 뽑기 위하여 노회와 상의하여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다음 총회 전에 새로운 노회추천이사 혹은 비례대표가 임명되기 전까지 업무를 본다. 새로운 교단의 이사로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후 본인의 임기를 다 하지 못한 (예. 질병이나 이전) 이사를 대체하여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면 새 이사는 보통 전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

(2017 총회회의록, 641 쪽)

E. 이전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를 위한 규칙

이러한 위원회들은 교단 전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며, 지난 총회의 특정한 결정을 실행하거나 교단의 선교, 교육, 출판, 구제 사역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1. 이러한 위원회는 총회에서 그들의 보고서를 명확히 전달하고,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위원회의 대변인은 회의 중에 분과위원회 의장과 보고자들과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

2. 만약 분과위원회에 넘겨진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분과위원회의 권고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의 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F. 총회 재판국

1. 권한

총회 앞에서의 심리와 항소는 총회가 임명한 재판국과 상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회 사이에 업무상 필요한 만큼 자주 만나고, 권고안을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체로 일반적인 분과위원회처럼 기능한다.

2. 위원자격

재판국은 12 명으로 구성되며 교단의 다양성을 드러내야 한다. 매년 4 명이 3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최소 이 4명 중 1명은 목사나 전도 목사여야 한다. 최소 1명은 법률가이어 한다. 최소 1명은 목사, 전도 목사 나 법률가가 아니어야 한다.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이사회가 제시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재판국은 교단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총회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위원회의 공석이 있을 경우, 교단이사회는 임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석에 임명해야 한다. 위원은 재선이 가능하나 6년 이상 섬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년 이상 위원회직에서 떠났던 이전 위원은 새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주어진다. 재판국은 위원 중에서 의장과 보고자를 선출한다. 재판국의 위원은 누구든지 해당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판국 권한으로 행하는 총회에서의 심리와 항소 절차

a. 총회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제기된 고발은 재판국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대표가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b. 노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 또한 재판국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대표가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c. 총회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들어온 서면 고발 및 총회가 행해야 할 공식적 판결을 요하는 기타 다른 사안들 또한 재판국 절차에 따라 재판국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대표가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d. 노회 앞에서의 항소에 이어 총회에 접수된 항소 심의 또한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대표가 재판국에 제시해야 한다. 재판국은 항소를 검토하고 교단이사회에 접수된 항소장이 계속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권고한다. 교단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항소심리는 진행하지 않는다. 승인이 되면 재판국은 재판국 절차에 따라 항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e. 보통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허용되어도, 각 총대 개인은 재판국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다.

f. 재판국은 사실확정과 권고, 권고의 근거와 함께 서면 권고안을 총회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총회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된 사실확정과 권고에서 실명 공개가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명을 삭제해야 해야 한다.

g. 총회 토론시, 재판국은 회의에 나설 수 있는 대변인을 2명까지 내세울 수 있다. 이 대변인들은 다른 발언자보다 우선권을 갖고 발언의 빈도수와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h. 변론의 각 진영은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요청은 총회에 한 요청에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한 재판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i. 만일 총회가 원고나 피고가 총회에서 진술하도록 허용한다면, 보고자가 재판국의 권고안을 제공한 후에 (만일 다수 보고서/권고안과 소수 보고서/권고안이 있다면, 둘 다 제시된 후에), 원고에 대한 반박 기회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원고나 피청구인은 심리에서 진술한 바와 다르지 않게 (헌법 30-c 조 보칙, 섹션 5, a, vii), 그들의 입장을 요약할 기회를 갖는다. 진술은 5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양쪽 진영 모두 총회에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다면, 원고가 총회에서 먼저 5분 이내의 진술할 기회를 받으며, 그 이후에 피고가 5분 이내의 진술할 기회를 받는다. 재판국 의장 혹은 교단대표는 양측에게 총회 진술의 기능은 사건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을 총회에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지침을 주어야 한다. 총회 진술 이후에, 어떤 진영도 총회에 추가적인 논평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 논평 혹은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서도록 총회에 요청할 수 없다.

j. 재판국은 재판국 사건에 관하여 총회 임원에게 합당한 서면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k. 총회는 재판국 사건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 2) 합의 혹은 조정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로 넘기는 방식으로
- 3) 적절한 노회 혹은 제직회에 권고 사항과 함께 환송하는 방식으로
- 4) 심리 혹은 항소 심리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l. 총회는 반드시 재판국이 제시한 사실확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예외로 한다.

- 1) 한 측 혹은 양측이 심리 중 중요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을 때,
- 2) 한 측 혹은 양측이 재판국이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접수했음을 알았을 때,

m. 만일 총회가 자체적으로 심리 혹은 항소심리를 직접 진행하려면, 정해진 재판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

n. 총회는 그 문제를 다시 재판국에 일임하여 주된 회의체에서 재심리를 열도록 결정할 수 있다.

o. 재심리를 제기하는 절차와 관련해 위의 섹션 k 부터 m 까지를 보라

1) 총회가 자체적으로 심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재심리로 환송하려는 측은 교단대표가 재판국에 보낸 사본을 총대들에게 배포할 때, 이 요청을 교단대표에게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이 때 해당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심리에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회가 부정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거나, 또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함께 왜 그 증거가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 모든 당사자와 재판국 대표는 이런 요청에 대하여 총회에 언급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허용된다.

p. 권고안이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행정 원칙 (예를 들어, 교회헌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해당할 경우, 총회는 그런 해석이나 적용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각 당사자와 재판국의 대표자에게 재판국의 권고에 따라 총회장이 지정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1993 총회회의록, 500-501 쪽)

(2014 총회회의록, 569 쪽)

(2019 총회회의록 개정, 718 쪽)

비고: 재판국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설명 전부를 보려면 교회헌법 30-c 조 보칙을 참조하십시오.

VII. 총회에서의 연금 문제

총회는 교단의 은퇴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헌의안, 소수 보고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미국과 캐나다의 연금 이사회 조언 이후로 미룬다. 이는 연금 기금 이사회 권고안을 따르는 총회 재정분과위원회의 결정 또는 독립적인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회를 향한 권고는 교단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총회 재정분과위원회의 안건 혹은 제안서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2004 총회 회의록, 623-24 쪽)

VIII. 진행 절차

우리 교단의 회의는 교회헌법 28 조가 규정하듯이, “교회에 관한 일들만 처리하며, 그것들을 교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총회는 토론과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절차와 관련된 다음 섹션이 제시하듯이, 선한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 헌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2019 총회 회의록, 804 쪽)

A. 총회의 비공개 세션

1. **집중토의:** 총회는 특별하거나 복잡미묘한 상황에서 집중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토의에는 오직 총대, 직원 자문위원, 신학교 자문위원, 교단이사회 회장과 위촉된 한 명의 이사, 그리고 교단대표의 추천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 만일 공동체 교제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대표가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또한 이 세션에 참여할 수도 있다.

2. **엄밀한 집중토의:** 총회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엄밀한 집중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 대개 개인의 명예나 교회의 안녕을 위한 합당한 예우에 따라 진행된다. 그런 세션에는 오직 총대, 교단대표가 추천한 직원 자문위원, 신학교 자문위원, 교단이사회 회장과 위촉된 한 명의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 만일 위에 언급된 자들 가운데 다루는 문제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 혹은 총회 규칙에 따라 토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3. 집중토의 또는 엄밀한 집중토의에서 진행된 결정이나 보고는 회의의 승인에 따라서, 공적인 문서에 무엇을 포함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해야 한다.

(2015 총회회의록 627 쪽, 2017 총회회의록 개정, 641 쪽 ,
2019 총회회의록 804 쪽)

B. 주 동의안

이 동의안은 고려사항이나 행동사항으로 총회에서 거론되는 사안이다.

1. 주 동의안은 다음의 조건하에 받아들여진다.

a. 회장이 동의안 제시자를 지명할 경우

b. 총회 회원의 재청이 있을 경우

c. 동의안이 회장에 의해 받아 들여질만 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d. 회장의 요구에 따라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시되었을 때

2. 주 동의안은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 동의안이 교회헌법과 충돌되거나 개혁신조의 성경해석에 반할 경우

b. 다른 동의안이 총회 앞에 있거나 그 동의안이 총회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과 충돌할 경우

c. 동의안이 총회가 이미 한 번 거절했던 동의안과 상당히 비슷하거나 이전에 제시되었던 사안이지만 어떤 처분도 없었던 사안에 있어서 총회가 행동할 자유를 간섭하는 경우

C. 동의안을 개의할 경우

이는 주 동의안에 대한 최종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표현과 의미에 있어서 주 동의안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다.

1. 동의안 개의는 다음 중 어떤 것이든 제안할 수 있다. 특정한 단어, 구절, 문장 혹은 문단을 빼는 것, 삽입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것
2. 동의안 개의는 그것이 주 동의안을 무효화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적절하지 않다.
3. 동의안 개의는 허용되고 재청을 받을 수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을 개의하는 경우는 한번에 한 동의안만 개의할 수 있다.)
4. 동의안 개의는 의장이 지명하고 받아들여질만 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총대가 재청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안은 토의를 시작하게 한다.
5. 사소한 개의는 의장이 의회 앞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주 동의안 작성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총대의 반대도 받지 않으면, 의장이 개의 채택을 선언할 수 있다. (때때로 “우호적인 개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약 개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

(2019 총회회의록, 804 쪽)

D. 동의안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

1. 총회가 합당하다고 여길 때, 동의안의 일시적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동의안의 연기는 의회가 한시간 혹은 하루 안에 그 동의안에 대한 고려를 재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정된 동의안은 토론의 여지가 없다.
2. 만일 안건이 어떤 정해진 시간으로 연기되고 총회는 그 시간에 결정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바쁘다면, 또 총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면, 총회는 연기된 안건의 고려로 인해서 그 업무에서 방해되거나 간섭될 필요가 없다.
3. 만일 총회가 안건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총회는 그 조치를 보류하는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조치를 보류할 동의안은 토론할 수 있다.
4. 심화 토론과 수정 요건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동의안은 토론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하다.

(2019 총회회의록, 804-805 쪽)

E. 의장의 사회권 보류

누구든지 의장의 진행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의장의 사회권 보류안을 토론하려면 재청이 있어야 한다. 사회권에 이의를 제기받았을 경우 사회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장의 사회권을 지속할지에 대해 회의가 투표로 결정할 때까지 의장의 사회권을 양도한다.

(2019 총회회의록, 805 쪽)

F. 저항할 권리

총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저항은 즉시 이루어지거나 관련 사안이 발효되는 회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저항은 개인적으로 등록하며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원은 필요를 느낄 때 부정적 투표를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투표가 종료된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적 투표에 대한 이유는 총회가 특별히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회의록**에 보통 인쇄되지 않는다.

G. 동의안 분리에 대한 요구

한 부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동의안은, 한 명 이상의 총대의 요구에 따라,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분리해야 하고 투표도 따로 해야 한다. 동의안 분리에 대한 요구는 고려하도록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2019 총회회의록, 805 쪽)

H. 의사진행발언

총회의 멤버는 누구든지 목적을 성취하는 법, 즉 목적을 위해 총대가 합당한 절차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충고를 요청할 수 있다.

I. 한번 결정된 안건을 총회 앞으로 다시 가져오는 동의안

총회의 멤버가 중요한 이유로 한번 결정된 안건을 재고하기를 고려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을 재고**하자는 동의안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동의안의 목적은 토론을 다시하고 다시 투표하자는 것이다. (동의안은 이전의 결정에서 다수 쪽에 투표했던 자가 제출해야만 한다.) 재고를 요청하는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수정될 수 없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 이전 결정을 폐지하기 위해 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이런 동의안의 목적은 이전 결정을 폐지하거나 뒤집으려는 것이다. (폐지는 총회가 세션에서 행한 결정에 적용된다; 그것은 이전 총회의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총회는 이전 총회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총회는 이전 총회가 도달한 결론과 차이가 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가장 최근에 내린 결정과 상충되는 이전의 모든 결정들을 무효화한다.) 이전 결정을 폐지하려는 동의안은 이전과 동일한 회의가 상정해야 하고 이전에 투표하여 우세한 측에 속한 총대에 의해 재청되어야 한다. 그 동의안은 토론과 수정이 가능하고, 통과를 위해서는 2/3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9 총회회의록, 805-806 쪽)

J. 토론

1. 발언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심의와 토의 중 발언의 길이는 한 명당 최대 3분으로 제한한다.

(2019 총회회의록, 815 쪽)

3. 발언권을 가진 회원이 토의 중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하게 긴 발언을 할 경우 회장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어떤 회원이 사안에 대해 두 번 발언했으면 보통 회장은 아직 두 번 발언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5. 총회 임원은 그들의 예상에 한 시간 넘게 토론할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위한 시간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보고서의 보고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총대는 시간제한에 도달했을 때 30 분 간격으로 토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다.

6. 토론 중인 동의안이 충분히 논쟁되었다고 생각될 때, 의장은 토론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만일 총회의 다수가 이 제안을 지지하면, 토론은 종료되고 투표가 행해진다. 더 이상의 발언은 허락되지 않는다.

7. 안건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여겨질 때 총대는, 주동의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말할 필요 없이, 토론종료를 (또한 “즉시 투표 요청”으로도 알려진) 동의할 수 있다. 토론의 종료를 동의하는 자는 총회 석상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자들, 즉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특권을 가진 자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토론 종료의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토론없이 한번에 행해져야 한다. 다수가 토론의 종료를 찬성하고, 직전까지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던 자들이 토론되고 있는 동의안에 대해 발언을 마치고 나서야, 총회 앞에서 투표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토론종료 동의안이 총회에 의해 채택되면, 주동의안을 개의할 동의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 총회회의록, 806 쪽)

K. 총대와 자문위원은 본회의 중 총대가 아닌 자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소통을 회피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소통은 심사 숙고 과정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총회회의록, 811-812 쪽)

L. 보고서 상정의 기준과 절차

1. 총회 연구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과 분과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연구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이 총회에 의해 우선적으로 상정된다 (cf. 섹션 VI, E, 2).

2.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다수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가 존재할 때, 먼저 다수 보고서의 권고안을 제출하고, 이어서 정보를 위해 소수 보고서의 권고안을 낭독한다. 다수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상정된다. 소수 보고서의 권고안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다수 보고서의 상정이나 다수 보고서의 권고안을 무산할 동의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섹션 VI, B, 2, e 참조)

(2019 총회회의록, 806 쪽)

M. 투표

다양한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두투표** (찬성 혹은 반대). 투표에서 흔한 방식이다.

2. 전자 투표.

a. 회장이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다수인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나 회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총회 회원이든 말할 경우, 회장은 총대에게 전자 재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전자 투표의 결과는 그 사안에 대한 총회의 공식적 결정을 포함한다.

b. 이 방식은 어떤 투표에나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지만 전자투표는 민감한 경우,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N. 이러한 총회 절차에 대한 규칙은 총회의 다수결 투표로 정지되거나 개외되거나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2019 년에 업데이트됨

북미주 개혁교회의 신조에 동의한다는 공적인 선포

우리는 여기 총회 안건집에 제시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교회의 총대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고 북미주 개혁교회의 회중이 고백하는 문서에 완전히 동의하여 이 임무를 감당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삶을 위한 유일하고 무오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가지 신조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기독교 신앙의 공교회적 표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가지 고백이 -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돌트 신경- 역사적 개혁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이며,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역사적 신조와 고백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대어 신앙고백의** 증언을 현 개혁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조에 따라 토론하고 결정할 때, 힘을 다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추구하기를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되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요 17:20-23).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총대는 북미주 개혁장로회의 신조에 동의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2013 년 총회에서 채택